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CONTENTS

I

자살예방교육 개요

1. 자살예방교육 개요 06
2. 주요 용어 정의 07

II

추진개요

1. 추진개요 10
2. 교육대상 12
3. 교육내용 및 승인교육 13
4. 교육방법 15
5. 결과보고 17

III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0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24
3. 학생(초·중·고등학교) 28

IV

부록

- <FAQ> 자주 묻는 질문 32
- <참고1>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35
- <참고2> 전국 광역·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40
- <참고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9

I

자살예방교육 개요

1. 자살예방교육 개요
2. 주요 용어 정의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교육 의무·노력대상 기관(단체)장 및 모든 직원, 학생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및 기간 [시행령 제10조의2]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통해 제출 (입력)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 교육수강 및 결과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가능

〈주요 용어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자살예방교육’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말함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함은 자살예방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의 위원회를 말함
- ‘자살예방교육 승인교육 프로그램’(이하‘승인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교육을 말하며, 승인교육에 한해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함은 승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유한 기관으로 보급(교육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자살예방교육 교육 실시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정의한 교육 의무 및 노력대상 기관을 말함
- ‘전문 또는 사내강사’라 함은 재단의 전문 또는 사내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말함
- ‘승인교육 강사’라 함은 재단 외, 수행기관에서 양성된 자살예방교육 강사를 말함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edu.kfsp.or.kr)’을 이하 ‘교육 누리집’으로 함

II

추진개요

1. 추진개요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및 승인교육
4. 교육방법
5. 결과보고

01 추진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 및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여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추진근거〉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1-2-1-1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2. 추진경과 및 지원현황

- 2013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
- 2018년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18-'22)」 시행 및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사업 추진
-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시행 및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 ('23.7.11. 공포, '24.7.12. 시행)
-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발간, 자살예방교육 시스템(누리집) 구축 및 운영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개정

3. 추진체계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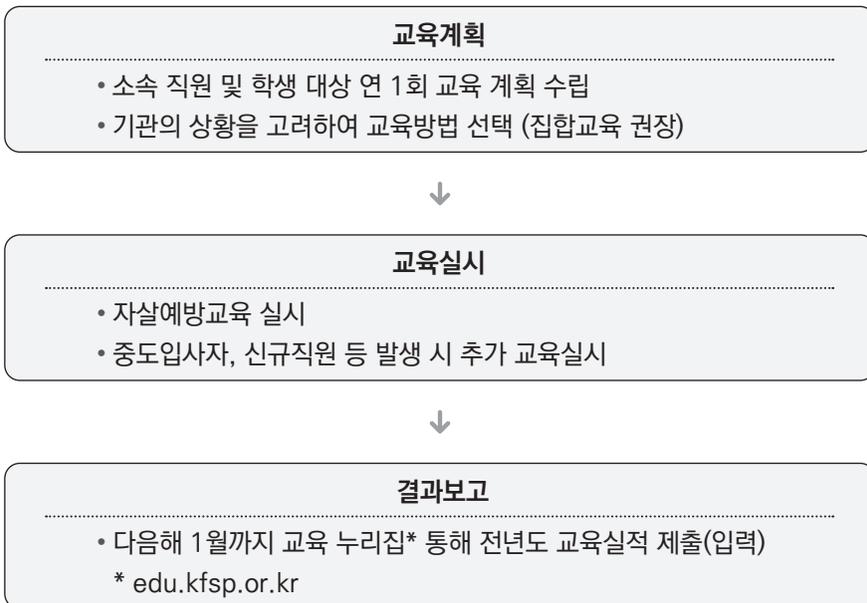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 자살예방교육 주체별 역할 〉

구분		역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제도 마련 및 사업 방향 수립 • 결과보고 취합 및 점검
수행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전문·사내강사 양성 및 관리 •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및 관리 • 교육실시 결과보고 접수 및 시스템 관리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승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교육 실시 • 승인받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관리
대상 기관	의무대상 기관	• 매해 자살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노력대상 기관	• 자율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노력

4. 교육운영 절차



02 교육대상

기관 내 직군(직급),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근로자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의무대상 :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 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③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 ④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 노력대상 : 교육 권고 대상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2항)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②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④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 기관 내 직군(직급),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 * 근로자 판단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 산정 시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현원 (사업장 내 모든 직원)

03 교육내용 및 승인교육

- 승인교육* 중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연 1회 교육 실시
 - * 공공·민간기관이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교육
- 승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확인 가능
 - * '25년 2월 기준, 인식개선 35종, 생명지킴이 65종 총 100종 교육 ... [참고1]

〈 대상별 권장하는 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집합교육기준)	
학생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또는 보고듣고말하기 청소년용	40분~50분	
성인 (직장인)	일반직군	성인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또는 보고듣고말하기 기본편	60분~120분
	사회복지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기본편	90분
	의료분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간호사, 의사)	90분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p>▶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 자살예방교육의 종류: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

구분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교육 목표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안녕과 공동체 안전 확보	자살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법
교육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타인의 가치 인식 ②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하기 쉬운 심리사회적 문제 - 정신과적 문제인식과 적절한 도움요청 방법 ③ 자기이해와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 다루기 - 스트레스 관리 및 심신건강 증진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살문제와 현황 ② 자살위험요인, 경고신호 ③ 자살위기 대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위기자 식별과 지원 - 자살위기자와 대화 방법 - 적절한 전문가 및 자원 연결 - 후속 관리 등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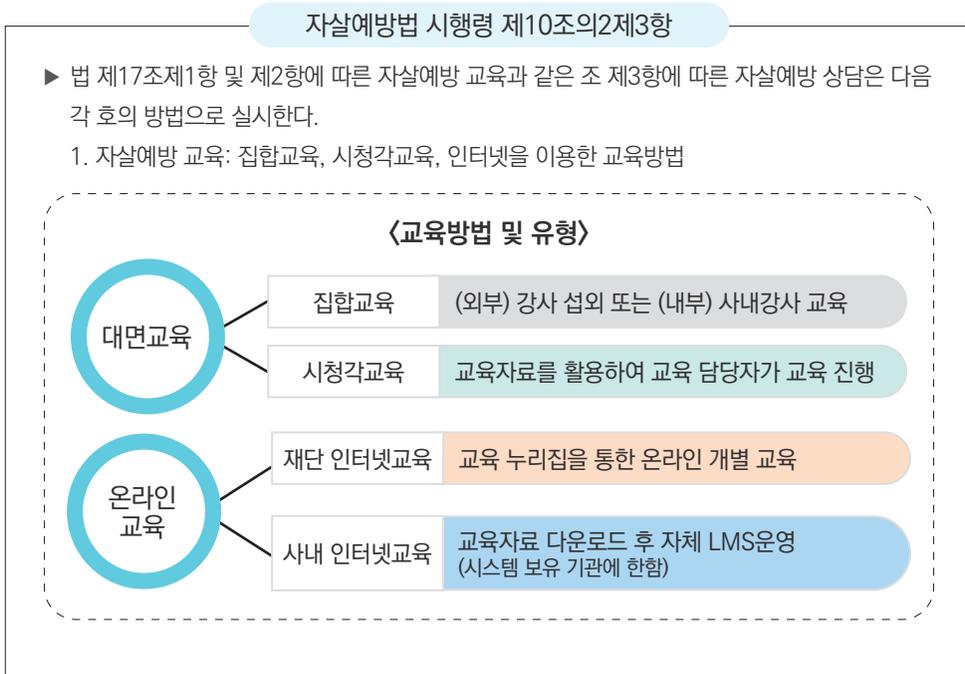
○ 승인심사 개요

- (신청자격)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으로 의무·노력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
- (심사기준) 개발과정, 교육내용, 교육운영 3개 분야 심사
- (심사절차)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공고

구분	주요 내용
모집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 (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희망기관 서류 제출 (기관→재단) - (제출서류) 심사신청서, 교육 프로그램 교안
↓	
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검토 (재단→기관) - 미비서류 확인 시 서류 보완 요청
↓	
심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심사
↓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결과통보 (재단→기관)
↓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준하여 교육 실시
↓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운영보고서 제출 (기관→재단) - 운영위원회 평가 통해 연장 또는 해지 가능

0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 고려하여 교육 실시



1 대면교육

(1) 집합교육

① (외부) 강사섭외

- (교육방법) ▲ 교육 누리집(edu.kfsp.or.kr) '전문강사 찾기*' 통해 강사를 직접 섭외하거나,
 ▲ 승인교육 보유기관[참고1] 또는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참고2]에 강의 의뢰

* (전문강사 찾기) 해당 페이지는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기관회원 로그인 후 접근 가능

② (내부) 사내강사

※ 모집일정 등 교육 누리집 참고

- (교육주체) 사내 직원 중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교육내용) 복지부(재단)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2) 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은 별도 강사양성과정 없이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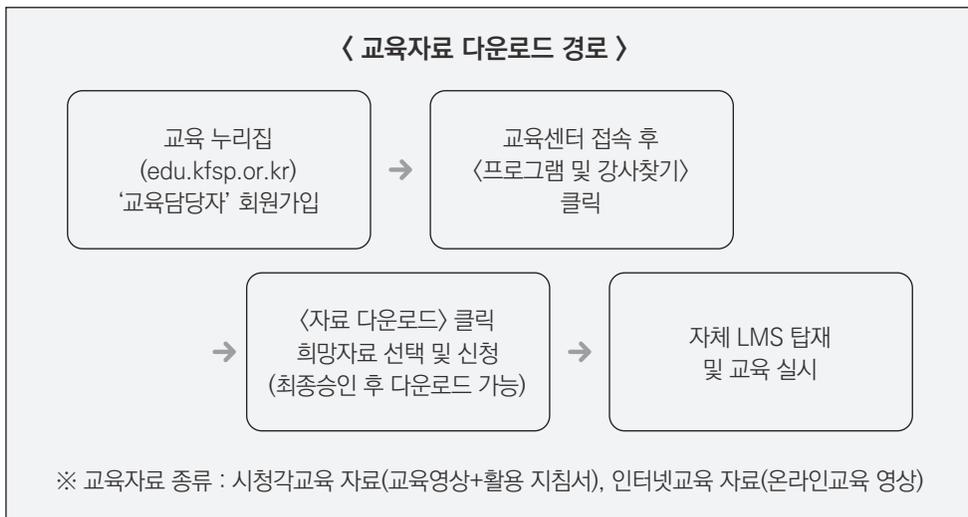
-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주체) 기관(단체)장 또는 교육 담당자
 - (교육내용) 복지부(재단)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 (교육방법) 교육 담당자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교육 지침서에 준하여 직접 진행

2 온라인 교육

(1) 조직(사내) 내 자체 온라인교육 시스템 활용

- (교육대상) 조직 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이 있는 기관
- (교육방법)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조직(자체) LMS 탑재하여 교육 실시

-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LMS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atics)



(2)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활용 [참고1]

- (교육대상) 조직 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이 없는 기관
- (교육방법)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근로자 개별학습 진행

05 결과보고

2025년(1월~12월) 교육 실시 후 2026년 1월까지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결과보고 필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제5항

-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보고대상) 교육대상 기관 및 단체 ※의무대상 기관 실적보고 필수
- (보고시기) '26년 1월까지 교육 누리집 통해 결과보고
- (보고방식) 각 기관(단체)장 또는 교육 담당자는 '25년 1월~12월 기관의 교육실적 (교육일시, 교육명, 교육방법, 수료인원, 대상인원 등) 입력

※ 국가기관(소방, 경찰 포함), 지자체, 교육행정조직(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의 경우, 중앙(본부)에서 일괄 취합 후 결과보고

Ⅲ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3. 학생(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소속 공무원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대상
매년 1회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세부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0조제1항
- 직군(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 상세 교육대상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입법·사법·헌법조직 및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등
 - ☞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직 *정부24 >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고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기준
 - 교육행정조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기준
 - 국군 (병사를 제외한 간부급 장교, 부사관, 군무원)
 - ☞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군 본부 및 각군 부대와 기관
 - 경찰 및 소방
 - ☞ 경찰청·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각 기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 * 당해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지정기관 기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1항 및 제76조1항에 따른 기관
 -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기준

2 교육 프로그램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 권장교육 프로그램 〉

교육 구분	권장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집합교육기준)
인식개선 교육	성인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60분
생명지킴이 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120분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에 고려하여 교육 실시

- 강사 대면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 실시 (☞ 안내서 p.15 참조)

〈 온라인교육(LMS) 〉

대상	기관명	수강과목
누구나	교육 누리집 교육센터(edu.kfsp.or.kr)	희망과목 선택수강
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지정과목 수강 (자살예방교육 검색)

☞ 전체 교육 프로그램 목록 [참고1] 참조

3 결과보고 방법

○ 제출방법 및 내용

- (국가기관, 지자체) 중앙·본부 취합 후 교육실적 통합입력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직접입력

○ 제출기한

- '26년 1월까지 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

※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26년 2월까지 결과 제출

Ⅲ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3. 학생(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내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매년 1회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세부 교육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름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류〉

기준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 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 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2) 기타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0조제4항)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3)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2 권고 교육 프로그램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권장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구분	교육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사회복지	생명지킴이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기본편
의료분야	생명지킴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간호사, 의사)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 고려하여 교육 실시

- 교육 누리집 교육센터(edu.kfsp.or.kr)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집합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 세부방법 안내서 p.15 참조
- ☞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참고1]

3 결과보고 방법

○ (제출방법) 단위기관별 보고

- 각 기관별 모든 소속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

○ (제출기한) 2026년 1월까지 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 필수

○ (보고내용) 매해 12월 31일 기준 소속 인원의 교육실적 결과 보고

* 입력내용: 교육일시, 교육명, 교육 방법, 실시 인원, 대상 인원, 담당자 정보

Ⅲ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3. 학생(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학생, 교원 및 교직원)의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 및 안내에 준하여 실시

학교장은 학생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대상
매해 1회 교육 실시 (결과보고 생략가능)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

2 교육실행 절차

1. 교육계획 수립하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연간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
 -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등 교육부 지침에 따른 생명존중교육(연간 6차시) 연계하여 추진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교과 교육 등을 이용하여 학생 자살예방교육 실시
- 각 시·도 교육청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생명존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교육감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

2. 교육방법 결정하기

- 학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방법 자율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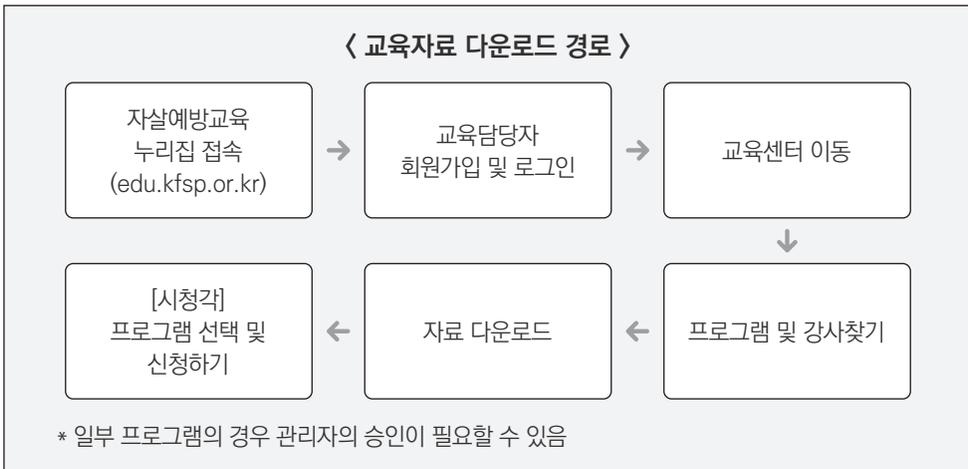
- ▶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또는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 ▶ 학급단위별 수업 실시 권고

※ 단순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불인정

(1) 교사에 의한 시청각 교육

- 시청각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학급별 교육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 '교사용 지도서' 준하여 교육 진행

교육 구분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 시간
인식개선 시청각 교육자료	초등(저·고)학생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40분
	중학생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45분
	고등학생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50분



(2)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 누리집 통해 '강사찾기' 가능

-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확인 후 직접 강사 섭외 [참고1]
- ☞ 세부 교육방법 안내서 p.15 참조

3 결과보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IV

부록

- 〈FAQ〉 자주 묻는 질문
- 〈참고1〉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 〈참고2〉 전국 광역·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참고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FAQ]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대상

Q.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자살예방법」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포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등

Q. 자살예방교육의 노력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자살예방법」 제17조제2항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칭합니다.

Q. 노력대상은 의무대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노력대상 기관(단체)도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수 후 결과보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Q. 자살예방교육의 교육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직군(직급), 내·외국인, 근로시간 등에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의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다.

Q. 자살예방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해당 되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릅니다. [☞ p.24 참조](#)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않지만,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사회복지관련 기관(종사자)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단, 사회복지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일 경우, 교육 노력대상에 해당됩니다.

Q.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해야합니다.

Q. 장기요양기관도 교육 의무대상인가요?

A. 기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급여제공기관'과 '재가급여제공기관'은 노인복지시설로 교육의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법」에 적용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방법

Q. 자살예방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승인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승인교육 목록은 교육 누리집 및 안내서 [참고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면 혹은 시청각 교육 진행 시 수강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 및 수강자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장소가 준비되어야 하며, PPT강의 혹은 영상 시청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Q.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해야 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내 명시된 교육대상별 권장교육을 수강하되 교육센터 내 탑재된 교육은 모두 승인교육으로 희망과목을 선택 수강하면 됩니다.

3 결과보고

Q. 교육 결과보고는 언제,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결과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Q.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조직(기관) 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인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이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신규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등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1] 수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목록

- 승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5년 2월 기준, 인식개선 35종, 생명지킴이 65종 총 100종 교육
- 승인교육에 한해 법령상 자살예방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아래 기관 외에도 전국 광역·기초자살예방 센터[참고2] 를 통해 교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프로그램 현황

- 인식개선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초등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초등저학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40분
2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초등고학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45분
3	중고등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중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45분
4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50분
5	성인	청년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60분
6		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60분
7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60분

- 생명지킴이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중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45분
2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고등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50분
3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사 (청소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50분
4	성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사 (대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60분
5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사 (성인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12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6	성인	보고듣고말하기 2.0 (성인, 청년, 중장년, 노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60~120분
7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 (노인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60분
8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사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90분
9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간호사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90분
10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자살관련 교육 (구급대원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120분
11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90분
12		장애인 가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90분
13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실무자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90분
14		알코올사용장애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실무자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90분
15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기초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60~120분
16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청소년, 성인, 노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120분

※집합교육시간 기준

●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승인교육 현황

※ 교육 및 강의 문의는 승인기관(개발기관) 직접 문의

- 인식개선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초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사랑이 싹싹」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집합교육	40분
2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사랑이 싹싹」		집합교육	40분
3		생명존중교육 '소중한 우리들 2.0'(초등 고학년)	시흥시자살예방센터 ☎ 031-316-6664	집합교육	40분
4		생명사랑 꼬북케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 02-764-8783	집합교육	80분
5		나봄 나봄 우리봄(6학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070-7008-9894	집합교육	40분
6		나봄 나봄 우리봄(5학년)		집합교육	40분
7		나봄 나봄 우리봄(4학년)		집합교육	40분
8		나봄 나봄 우리봄(3학년)		집합교육	40분
9		나봄 나봄 우리봄(2학년)		집합교육	40분
10		나봄 나봄 우리봄(1학년)		집합교육	4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가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11	초등	너는 특별하단다(초등 고학년)	이다라운지 ☎ 010-6803-0975	집합교육	80분
12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집합교육	40분
13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집합교육	40분
14	중등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I MY ME MINE'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38-2662	집합교육	45분
15	초등고~ 중등	마음보호훈련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 02-764-8783	집합교육	90분
16	중등	La La(라라)		집합교육	270분
17	중고등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중고등학교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집합교육	45~50분
18	중고등~ 성인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인터넷교육	20분
19		내 마음 돌보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02-727-2498	집합교육	60분
20	초등고~ 성인	지피지기 백전백승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 02-2138-0807	집합교육	90분
21	성인	안녕해U?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33-0468	집합교육	50분
22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집합교육	60분
23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성인(청년) ver. 온라인		인터넷교육	26분
24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중장년 ver.		집합교육	60분
25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중장년 ver. 온라인		인터넷교육	30분
26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노인 ver.		집합교육	60분
27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노인 ver. 온라인		인터넷교육	40분
28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인터넷교육

- 생명지킴이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가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초등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K	인천시교육청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40분
2	초등고 ~고등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031-247-3279	집합교육	45분
3		내 생명 소중하게	전북생명의전화 ☎ 063-286-9192	집합교육	40~50분
4		마음 줌(zoom): 이론편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2-745-0199	집합교육	50분
5	중고등 학생	생명보듬이 기초교육 '무지개'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 02-2138-0807	집합교육	45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6	중고등 학생	생명사랑 토탈교실 3.0 (중학교 1학년용)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031-212-0437	집합교육	100분	
7		생명사랑 토탈교실 게이트키퍼ver.		집합교육	50분	
8		생명사랑 토탈교실 자해예방ver.		집합교육	50분	
9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인드프렌즈'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67-5510	집합교육	50분	
10		또래생명지킴이 훈련프로그램 "내 우리학교 Gatekeeper야!"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 054-444-0199	집합교육	45분	
11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이해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63-451-0363	집합교육	50분	
12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집합교육	50분	
13		청소년 생명존중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 053-326-9275	집합교육	50분	
14		STAY-생명지기 (A-청소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인터넷교육	32분	
15		안전한 테두리의 나-안테나O-K	인천시교육청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45분	
16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안녕, 괜찮니?"	전라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0	집합교육	50분	
17		생명이어달리기	충청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집합교육	60분	
18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WHAT'S UP'	화성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305-1010	집합교육	60분	
19		중등 ~성인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한마음함몰자살예방센터 ☎ 02-727-2498	집합교육	60분
20		성인	동료 '생명지킴이' 교육	고용노동부	집합교육	120분
21			요즘어때? (청년편)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33-0468	집합교육	60분
22			경상남도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 그대에게'	경상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239-1400	집합교육	60분
23			생명지구대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67-5510	집합교육	60분
24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생명총전기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집합교육	50분	
25	노인자살예방교육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581-5830	집합교육	40분	
26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Gatekeeper Training) 프로그램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집합교육	180분	
27	STAY-생명지기 (S-성인, Y-청년, S-중장년)			인터넷교육	21~40분	
28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중장년)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48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승인기관(개발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간
29	성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이심전심'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031-247-3279	집합교육	60분
30		초록초록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070-7008-9894	집합교육	40분
31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0	집합교육	60분
32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 [기본형], [단축형]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51-0650	집합교육	60~180분
33		생명이어달리기 [성인], [노인]	충청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집합교육	50-60분
34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02-745-7942	집합교육	180분
35	관련 종사자	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간부용)	국방부	집합교육	60-120분
36		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병사용)		집합교육	60-120분
37		자살중재훈련 TA	마음두레(주) ☎ 041-406-7311	집합교육	420분
38		생명을 지키는 열쇠 -요양보호사를 위한 CARE 기법(요양보호사)	미래교육지원연구소 ☎ 1522-0313	인터넷교육	65분
39		STAY-생명지기 (T-교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인터넷교육	18분
40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집합교육	120분
41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종사자형)		집합교육	60분
42		S-생명지기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태국어, 네팔어)		시청각교육	22분
43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K (기본과정)	인천시교육청	인터넷교육	63분
44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K (초등심화)		인터넷교육	85분
45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K (중등심화)		인터넷교육	83분
46		노인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64-717-3000	집합교육	60분
47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 [청소년 전담인력용]	전북특별자치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51-0650	집합교육	80분
48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해병대	집합교육	120분
49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 (게이트키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02-6959-4539	집합교육	50분	

※집합교육시간 기준

[참고2] 전국 광역·기초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광역센터 현황

연번	시·도	시설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02-3458-100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3444-9934
2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	051-242-2575
3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053-256-0199
4	인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032-468-9917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32-468-9911
5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	062-600-1930
6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	042-486-0005
7	울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울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	052-283-0199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4-865-4597
9	경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경기도자살예방센터	031-212-0437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강원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	033-251-1970
11	충북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3-217-0597
12	충남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충청남도광역시자살예방센터	041-566-9184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063-251-0650
14	전남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1700
15	경북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경상북도자살예방센터	054-748-6400
16	경남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경상남도자살예방센터	055-239-1400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제주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	064-717-3000

● 기초센터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전화번호
1	서울 (25)	종로구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745-0199
2		중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36-6606
3		용산구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99-8340
4		성동구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98-1080
5		광진구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450-1895
6		동대문구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963-1621~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7	서울 (25)	중랑구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422-5921~3	
8		성북구	성북구자살예방센터	02-916-9118	
8		성북구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41-6314	
9		강북구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구보건소 생명존중팀)	02-901-4842	
10		도봉구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091-5243	
11		노원구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933-4591	
12		은평구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51-8680	
13		서대문구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140-8081	
14		마포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272-4937	
15		양천구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061-8881	
16		강서구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600-5926~9	
17		구로구	구로정신건강복지센터	02-861-2284	
18		금천구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281-9314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670-4793	
20		동작구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820-4072	
21		관악구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879-4911	
22		서초구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55-8215	
23		강남구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26-0344	
24		송파구	송파정신건강복지센터	02-402-5871	
25		강동구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471-3223	
26		부산 (16)	강서구	부산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73-3418
27			금정구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18-8700
28			기장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1-727-5386
29			남구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26-4660
30			동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11-4600
31	동래구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07-7306	
32	부산진구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38-2662	
33	북구		부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334-3200	
34	사상구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사상구자살예방센터	051-314-4101	
35	사하구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65-0512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36	부산 (16)	서구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46-1981
37		수영구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14-5681
38		연제구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861-1914
39		영도구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404-3379
40		중구	부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57-7057
41		해운대구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41-3567
42	대구 (9)	중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256-2900
43		동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983-8340
44		서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564-2595
45		남구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28-5863
46		북구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353-3631
47		수성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756-5860
48		달서구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37-7852
49		달성군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3-643-0199
50		군위군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380-7427
51	인천 (11)	중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760-6090
52		동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동구자살예방센터	032-765-3690
53		미추홀구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미추홀구자살예방센터	032-421-4045~7
54		연수구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899-9430
55		남동구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남동구자살예방센터	032-465-6412
56		부평구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5602~3
57		부평구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1371~2
58		계양구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547-7087
59		서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718-0625~6
60		강화군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932-4093
61		옹진군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721-0560
62	광주 (5)	동구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233-0468
63		서구	광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350-4196
64		남구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676-8236
65		북구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267-5510
66		광산구	광주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941-8567
67	대전 (5)	동구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673-4619
68		중구	대전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257-993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69	대전 (5)	서구	대전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488-9741
70		유성구	대전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825-3527
71		대덕구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931-1671
72	울산 (5)	중구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92-2900
73		남구	울산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27-1116
74		동구	울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33-1040
75		북구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88-0043
76		울주군	울산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2-262-1148
77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44-865-5225
78	경기 (31)	가평군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가평군자살예방센터	031-581-8881
79		고양시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고양시자살예방센터	031-927-9275
			고양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031-908-3567
80		과천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과천시자살예방센터	02-504-4440
81		광명시	광명시자살예방센터	02-2618-8255
81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897-7787
82		광주시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광주시자살예방센터	031-762-8728
83		구리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구리시자살예방센터	031-523-8644
84		군포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군포시자살예방센터	031-360-1779
85		김포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김포시자살예방센터	031-998-4005
86		남양주시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031-592-5891
87		동두천시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	031-865-3632
88		부천시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부천시자살예방센터	032-654-4024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부천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032-654-4024
89		성남시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성남시자살예방센터	031-780-7000
			성남시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51-2445
90		수원시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031-253-5737
			수원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2-5737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73-7511	
91	시흥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시흥시자살예방센터	031-316-6664	
92	안산시	안산시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11-757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93	경기 (31)	안성시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안성시자살예방센터	031-8057-8356
94		안양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안양시자살예방센터	031-469-0207
95		양주시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양주시자살예방센터	031-840-7320
96		양평군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양평군자살예방센터	031-773-1331
97		여주시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여주시자살예방센터	031-886-3437
98		연천군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연천군자살예방센터	031-835-8106
99		오산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오산시자살예방센터	031-374-8680
100		용인시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용인시자살예방센터	031-286-0949
101		의왕시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의왕시자살예방센터	031-458-0682
102		의정부시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031-894-8089
103		이천시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이천시자살예방센터	031-637-2331
104		파주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파주시자살예방센터	031-953-2117
105		평택시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평택시자살예방센터	031-658-9818
106		포천시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포천시자살예방센터	031-532-1670
107		하남시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하남시자살예방센터	031-794-6508
108		화성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화성시자살예방센터	031-352-0175
			화성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031-305-1010
109		강원 (18)	춘천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춘천시자살예방센터
110	원주시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자살예방센터	033-746-0198
111	강릉시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강릉시자살예방센터	033-651-9668
112	동해시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33-0197
113	태백시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54-1278, 1378
114	속초시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633-4088
115	삼척시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74-0190
116	홍천군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홍천군자살예방센터	033-435-7482
117	횡성군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45-9901
118	영월군		영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70-5431
119	평창군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120	정선군		정선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560-2869
121	철원군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50-5104
122	화천군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40-2725
123	양구군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82-9339
124	인제군		인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60-277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125	강원 (18)	고성군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680-4001
126		양양군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670-1730
127	충북 (14)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043-298-0199
128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043-291-0199
129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043-234-8686
130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043-215-6868
131		충주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855-4006
132		제천시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646-3074~5
133		보은군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544-6991
134		옥천군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731-2199
135		영동군	영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740-5924
136		증평군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35-4276~9
137		진천군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536-8387
138		괴산군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32-0330
139		음성군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72-1883
140		단양군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420-3267
141	충남 (16)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서북구자살예방센터	041-571-0199
142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자살예방센터	041-521-5056
143		공주시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852-1094
144		보령시	보령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930-5975
145		아산시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536-8584
			아산청년마음건강센터	041-547-5580
146		서산시	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661-8116
147		논산시	논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746-8121
148		계룡시	계룡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2-840-3574
149		당진시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352-4071
150		금산군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751-4721
151		부여군	부여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830-8626~30
152		서천군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950-6764
153		청양군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940-4543
154		홍성군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630-9758
155		예산군	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339-6112
156	태안군	태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671-5335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157	전북 (14)	전주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273-6996
158		익산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841-4235
159		군산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160		정읍시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35-2101
161		김제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42-1350
162		남원시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625-4122
163		완주군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262-3066
164		고창군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63-8738
165		부안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81-5830
166		진안군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430-8598
167		무주군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320-8233
168		임실군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640-3125
169		장수군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350-2802
170		순창군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650-5318
171	전남 (22)	목포시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276-0199
172		여수시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659-4289
173		순천시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49-6695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061-811-0130
174		나주시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339-4850
175		광양시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97-3778
176		담양군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80-2765
177		곡성군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63-9917
178		구례군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780-2948
179		고흥군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30-6832
180		보성군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53-5500
181		화순군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74-4600
182		장흥군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64-0199
183		강진군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5303
184		해남군	해남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31-3760
185		영암군	영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70-6569
186		무안군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50-5052
187		함평군	함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20-2425
188	영광군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566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189	전남 (22)	장성군	장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95-0199
190		완도군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50-6745
191		진도군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40-6933
192		신안군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240-8847
193	경북 (24)	포항시남구	포항시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4-270-4091
194		포항시북구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4-270-4191
195		경주시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777-1577
196		김천시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433-4005
197		안동시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842-9933
198		구미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054-444-0199
199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054-480-5190
200		영주시	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639-5723
201		영천시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331-6770
202		상주시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536-0668
203		문경시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554-0802
204		경산시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3-816-7190
205		의성군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830-6774
206		청송군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870-7362
207		영양군	영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80-5197
208		영덕군	영덕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730-7161
209		청도군	청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373-8006
210		고령군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81
211		성주군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30-8264
212		칠곡군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73-2023
213	예천군	예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50-8035	
214	봉화군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74-1126	
215	울진군	울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789-5037	
216	울릉군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790-6823	
217	경남 (20)	창원시 창원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441
218		창원시 마산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031
219		창원시 진해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391
220		진주시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759-0805
221		통영시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50-617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전화번호	
222	경남 (20)	사천시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831-3745	
223		김해시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20-5948	
224		밀양시	밀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59-6109	
225		거제시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39-6119	
226		양산시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67-2255	
227		의령군	의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70-4022	
228		함안군	함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80-3133	
229		창녕군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30-6260	
230		고성군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670-4023	
231		남해군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860-8932	
232		하동군	하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880-6670	
233		산청군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70-7632	
234		함양군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60-5358	
235		거창군	거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40-8398	
236		합천군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30-4082	
237		제주 (2)	제주시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4-728-4074
238			서귀포시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4-760-6553

[참고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99호, 7. 12. 공포)
<p>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p> <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p>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99호, 7. 12 공포)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
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99호, 7. 12 공포)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